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김소양 의원

나. 의안번호 : 제2589호

다. 발의일자 : 2021.08.11

라. 회부일자 : 2021.08.18

### 2. 제 안 사 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에 근거하여 중증 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-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,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
-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함

### **3. 주 요 내 용**

- 가.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(안 제31조제1항제12호)

### **4. 참 고 사 항**

- 가. 관련 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등
- 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    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수도요금 감면 현황

-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에는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요금 감면방법 및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시행규칙(제27조)에서 정하고 있음.

#### <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방법>

감면대상(조례 제31조)	감면방법 및 감면율(시행규칙 제27조)
· 천재지변, 무허가건물 철거지역	· 시장이 정함
·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	· 월사용량에서 10m <sup>3</sup> 을 감면
· 공공목적용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	· 전액 경감
·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	· 1회당 600원 할인
·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	·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 - 2만원 이하: 200원 - 2만원 이상: 1%, 총 할인액 1,000원 이하
·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	· 월사용량에서 10m <sup>3</sup> 을 감면
·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 등의 사용량 50% 할인	·
· 시장이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	·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: 20% 할인 · 군부대: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

## 2) 상위법령 검토

-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「지방공기업법」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<sup>1)</sup>으로서 같은 법 제14조(독립채산)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조(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)에서는 “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담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음.
-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른 회계 보전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감면 조항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설<sup>2)</sup>한 바, 조례 개정애 앞서 장애인 지원 관련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실(장애인 자립지원과), 예산담당관 및 상수도사업본부 간의 예산 관련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.

## 3)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(안 제31조제1항 제12호)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책임)와 같은 법 제32조(장애인등록)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금년 2월 기준으로 393,636명이며, 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sup>3)</sup>은 148,572명임.

1) 관련 규정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, 「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」 제11조

2)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('20.3.26. 개정·시행)

3)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5270호 '17.12.19. 공포, '19.7.1. 시행됨)에 따라, '장애 등급' 용어를 '장애 정도'로 변경하고, 장애 정도에 따라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및 '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'으로 구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표기함.

<서울시 등록장애인 현황('21.2월말 기준)>

장애 유형	합 계	심한 장애			심하지 않은 장애		
		소 계	남 성	여 성	소 계	남 성	여 성
합 계	393,636	148,572 (38%)	89,155	59,417	245,064 (62%)	138,961	106,103

- 안 제31조제1항제12호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월 수도물 사용량 중 10톤(m<sup>3</sup>)<sup>4)</sup> 정도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, 서울시에서도 지난 5월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계획을 수립<sup>5)</sup>한 바 있음.

<세대별 매월 감면대상 금액>

구 분	수 도 사 용 요 금(10m <sup>2</sup> 당)	
	'22. 1. 1. ~	'23. 1. 1. ~
총 계	8,800원	9,800원
상수도요금 감면액	4,800원(480원/m <sup>2</sup> *10m <sup>2</sup> )	5,800원(580원/m <sup>2</sup> *10m <sup>2</sup> )
하수도요금 감면액	4,000원	4,000원

-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<sup>6)</sup>하였고 현재 예산담당관에서 심의·조정 중에 있음.
- 따라서 관련 예산에 대해 예산담당관에서 예산편성에 최종 합의한다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, 실무적으로는 2022년 수도요금 개편<sup>7)</sup>에 따른 요금관리시스템 개선 작업이 계획되어 있어 시행 시기 조정<sup>8)</sup>은

4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,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규모와 동일함.  
 5)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계획(서울시 복지정책실, '21.5)  
 6) '22년도 신규예산 약 91억원(상,하수도요금 감면액)을 책정, 예산담당관실에 요구 완료  
 7) 상수도요금 2차 인상과 업종통합(공공용→일반용), 하수도요금에 대한 한부모 감면 신설

필요할 것임.

또한, 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관련 부서(복지정책실)에서는 비용 보전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.